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
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 겸직을 금지하도록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기업규제완화법) 제29조제2항제4호,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여 2023.1.3일 공포함.

개정 기업규제완화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를 ‘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’로 명시한 점과 개정이유에 의거하여, 위임받은 내용을 동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‘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서 정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’로 규정함.

3. 주요내용 : 소방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의 예외 규정

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4호,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소방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,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- 법 제29조제2항제4호,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을 말한다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(2023.3월~4월)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과 협의 결과, 규제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법 제29조제2항제4호,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(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)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.

제3조(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(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)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·화

약류관리보안책임자·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안전관리자의 범위 등) ① ~ ⑦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(안전관리자의 범위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법 제29조제2항제4호,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
연 락 처	(044) 203 - 5568